

<p>리온, 이디오피아, 부르키나파소, 모리 시어스</p> <p>라. 라등급 :</p> <p>(1) 아세아주·대양주 : 인도네시아, 버마, 스리랑카, 튀지, 네 팔</p> <p>(2) 남·북아메리카주 : 구아테말라, 엘살바 도로, 도미니카공화 국, 콜롬비아, 베네 수엘라, 에크라도르, 페루, 볼리비아, 우</p>	<p>투구아이, 파라과아 이, 아르헨티나</p> <p>(3) 유 럽 주 : 해당국가 없음</p> <p>(4) 중동·아프리카주 : 레바논, 북예멘, 모 로코, 튀니지, 루안 다, 말라위, 스와지 랜드, 가나, 소말리 아</p> <p>2.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 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 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</p>
<p>3. 서울特別市議會에出席하여答辯할수있는關係 公務員등의範圍에관한條例案 (14時 13分)</p> <p>○議長 金瓌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 別市議會에 출석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 務員 등의 範圍에 관한 條例案을 上程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運營委員會 金炯奎委員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金炯奎委員 新民黨의 金炯奎議員입니다. 서울特別市議會에 출석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 등의 範圍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 여 提案說明을 하여 드리겠습니다.</p> <p>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第37條第1項에 의거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은 地方議 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해서 行政事務의 처리 상황을 報告하거나 意見を 進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 이렇게 規定되어 있습니다. 同條第2項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 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答辯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地 方自治團體의 長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출 석 答辯하게 할 수 있다라고 規定되어 있습 니다. 따라서 同條第3項에는 앞서서 말하는 第1項 또는 第2項에 의하여 地方議會 또는 그 委員會에 출석해서 答辯할 수 있는 關 係公務員은 條例로 정한다고 規定되어 있습니 다. 이와 같이 市議會에 출석해서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 등 範圍에 관한 事項을 법에</p>	<p>서 구체적으로 規定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條例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條例를 정한 것입니다. 따라서 출석 答辯 公 務員  등에 이 範圍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市議會 運營에  단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. 이 條例制定案에 대한 자세한 內容은 배 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 特別市議會에 출석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 公務員 등의 範圍에 관한 條例案은 運營委員會 에서 與野 合議하여 決議된 것이오니 존경하 는 議員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滿場一致로 議決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提案說明을 마치고자 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金瓌會 金炯奎委員으로부터 提案說明을 들으셨습니다. 그러면 서울特別市議會에 출석하 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 範圍에 관한 條例案에 대해서 議員 여러분 異議없으십니 까? (「異議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 異議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照)</p> <p>서울特別市議會에出席하여答辯할수있는關係公務員 등의範圍에관한條例(案) '91年 8月 8日 運營委員長提出</p> <p>1. 提案經緯 (1) 運營委員會 廉東秀 議員등 10인이 成案</p>

하고, 同 10人의 議員이 書面動議로 提出한 서울特別市議會에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 등의 範圍에 관한 條例(案)를,

(2) 第49回 서울特別市議會(臨時會) 第1次 運營委員會('91.8.8)에서 審査한 結果 이 를 當 委員會(案)으로 採擇하고 本會議에 提案하는 것임.

2. 提案理由

(1) 地方自治法 第37條의 規定에 따라 서울特別市議會 또는 그 위원회에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 등의 範圍를 具體的으로 定하고자 하는 것임.

3. 主要骨子

- (1) 부시장, 교육감, 부교육감
- (2)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·국장
- (3) 綜合建設本部長, 上水道事業本部長, 지하 建設本部長 또는 3級以上인자
- (4) 法 第104條 내지 第107條 및 地方教育 自治에 관한 法律 第41條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所屬行政機關長 또는 所屬公 務員중 3級以上인자
- (5) 法 第37條 및 第138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公社 및 公團의 임원
- (6) 議會 또는 委員會가 必要하다고 인정한 경우 4級以上인자

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범위에 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)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위 원회 관계공무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1. 부시장, 교육감 및 부교육감
- 2.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·국장급
- 3. 종합건설본부장, 상수도사업본부장, 지하철 건설본부장 또는 소속공무원중 3급 이상인

자

- 4.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또는 소속공무원중 3급 이상인 자
  - 5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제41조 및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, 교육기관장
  - 6.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중 3급이상인 자
  - 7. 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
-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, 답변하 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4.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案 (14時 18分)

○議長 金瓌會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 行政事務 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案 을 上程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運營委員會 林東奎委員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林東奎委員 안녕하세요? 運營委員會 林東 奎委員입니다. 서울特別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 겠습니다.

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第36條第1項에 地方議 會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事務를 監査하거나 그 事務중 特定事案에 관하여 地方議會의 議 決로 調査할 수 있으며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보조기관에 출석, 증언이나 意見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라 고 規定되어 있고 同條第3項에는 第1項의 監 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事項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라고 規定